

7.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中 改正令(案)立法豫告

財政經濟院 第1997-29號 1997. 4. 16

주요골자

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7년 12월 31일까지 내용연수의 80퍼센트 이상이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.

개정 이유

경기하강국면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합리화 투자를 통한 경쟁력강화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노후시설개체투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